

## 12. 연봉계약제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교직원(이하 “연봉계약직”이라 한다)의 근로조건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9학년도부터 신규 임용되는 정규 교직원으로 한다.

제3조 (정의) 정규 교직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정원에 근거하여 공개채용(특별채용의 경우를 포함한다)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 이사장의 임명을 받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①항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.(2021.12.23.개정)

제4조 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정하고, 직원인 경우에는 신규 임용시에는 1년으로 한다.

② 급여계약기간과 금액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매년 정한다.

제5조 (근로기간의 재계약) 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업적평가, 근무성적 및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② 학교는 재계약 여부를 계약기간 종료 2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재계약의 체결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신규계약임용시의 연봉책정) ① 신규계약임용시 연봉은 자격조건, 경력,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, 현행 교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 중 봉, 상여금, 정근수당 등을 포함한다.

② 국내·외 석학이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경우 및 그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연봉의 재계약) 재계약 연봉의 산정을 위한 평가는 연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며, 위원회 구성, 평가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 (기준급여 및 호봉의 설정) ① 기준급여 및 호봉은 교원의 경우 호봉산정지침, 직원의 경우 직원인사규정 경력환산표에 따라 확정한다.(2021.12.23.개정)

② 적용되는 호봉 확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급여 및 호봉을 재확정 할 수 있다.(2021.12.23.개정)

제10조 (연봉 외의 급여) ①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기준급여 및 호봉에 따라 산정하여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직원의 업적 및 직무평가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성과급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.(2018.1.31. 항추가)

제11조(타 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, 직원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규정 등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 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